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10. 7 선고 2021가단9146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

담당변호사 이현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

담당변호사 김유경

변 론 종 결 2022. 8. 19.

판 결 선 고 2022. 10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와 C은 1987. 9. 16. 혼인신고 하고, 피고를 포함한 자녀 3명을 두었으며,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682(본소), 2020드단54092(반소) 이혼 사건의 판결이 2021. 9. 1.

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.

○ 광명시 D건물 E호(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5. 11. 피고 명의로 2016. 4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C과 혼인 중에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여 당시 군 복무 중이던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빌라의 매입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바,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입대금의 1/2인 8,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빌라를 원고가 매입 또는 매입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에 관하여, 원고가 이를 제출한 것이 없는 반면,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피고와 C, F가 마련하였다고 다툼고 있다.

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수희